



제410회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당선인’ 을 ‘당선자’ 로 용어 수정 〉

- 최강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3934호)
- 최강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3936호)

2023.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3
IV.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 최강욱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8. 22.

다. 회부연월일 : 2023. 8. 23.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 최강욱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8. 22.

다. 회부연월일 : 2023. 8.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장의 대상을 “대통령당선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제67조 등에서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헌법 규정대로 “당선자”로 표현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자”와 “인”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은 대통령에 입후보한 사람을 가리켜 “대통령후보자”로 표현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는 단어는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가 적합함.

이에 현행법의 “대통령당선인”이라는 표기를 “대통령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지사가 부지사에 대하여 그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하면서,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대통령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최고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제67조 등에서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헌법 규정대로 “당선자”로 표현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자”와 “인”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은 대통령에 입후보한 사람을 가리켜 “대통령후보자”로 표현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는 단어는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가 적합함.

이에 「인사청문회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고 이를 준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표현도 변경함으로써, 법률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6항 후단).

Ⅲ. 참고사항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현행법은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음. 개정안은 헌법과 법률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대통령당선인</u>	2. <u>대통령당선자</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인사청문회) ① ~ ⑤ (생략)	제43조(인사청문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⑥ ----- -----

두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者)와 ‘-인’(人) 은 모두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차이가 없으며²⁾, 따라서 ‘당선자’와 ‘당선인’의 사전적 의미 역시 ‘선거에서 뽑힌 사람’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³⁾.

이와 관련하여 ‘당선’은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공천자, 낙찰자, 승리자, 합격자’ 등 용례에 따라 접미사 ‘-인’보다는 ‘-자’와 결합하는 것이 어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⁴⁾.

개정안은 의미는 동일하나 헌법과 법률이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 어법에 보다 적합하면서 상위규범인 헌법과도 일치하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법 체계적 통일성을 높이고, 상이한 용어 사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려는 타당한 취지로 생각됨.

다만, 해당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여러 법률에서 다양한 선거에 뽑힌 사람을 ‘당선자’ 또는 ‘당선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므로,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는 동 개정안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 전반에 걸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⁵⁾.

2) -인(人)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원시인, 종교인, 한국인, 감시인, 그리스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자(者),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과학자, 교육자, 노동자, 참석자, 기술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 당선자(當選者) 「명사」 선거에서 뽑힌 사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당선인(當選人) 「명사」 선거에서 뽑힌 사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4) 박만규, 「접미사 ‘-자’(者)와 ‘-인’(人)의 선택 요인」, 한국사전학 39 pp.134-164, 2022.

- 공천자, 낙찰자, 승리자, 합격자 등은 오직 ‘-자’와만 결합하고 ‘-인’과는 결합하지 않음

(*공천인, *낙찰인, *승리인, *합격인)

<당선자 및 당선인 용어 사용 입법례>

법 률	사용용어	비 고
국회법	당선자, 당선인	의장단 등 선거 - 당선자 대통령 당선인, 의원 당선인
인사청문회법	당선인	대통령당선인
공직선거법	당선인	대통령당선인, 의원당선인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당선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당선인	
정치자금법	당선인	
정당법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당선인	대통령당선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당선인	대통령당선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당선인	대통령당선인
국가장법	당선인	대통령당선인
지방자치법	당선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당선인	대통령당선인
농업협동조합법	당선인	
산림조합법	당선인	
수산업협동조합법	당선인	
신용협동조합법	당선인	
염업조합법	당선인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	당선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당선인	
새마을금고법	당선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당선자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당선자’라는 용어를 명확히 사용하고 있

- 5) 현재 ‘당선인’을 ‘당선자’로 개정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법률안은 다음과 같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312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307호)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306호)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304호)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305호)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115309호)

고, 어법적으로도 ‘당선자’라는 표현이 적합하므로, 법체계 전체에서의 통일적인 용어 사용을 위해 해당 법률들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것이며,

반면, 헌법에서는 대통령 선거 외에 다른 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칭하는 용어가 없고, 사전적으로도 두 용어의 의미가 동일하므로, 어느 용어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개정안과 같이 개별 법률의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당선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률안 계류 현황>

연번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제안일	회부일
1	211530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2022.04.18.	2022.04.19.
2	2115306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6인	2022.04.18.	2022.04.19.

문 의 처

02)6788-5334